

선 람	기관의 장



제 558 호

2004년 1월 30일 금요일

차 례

규 칙

-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제609호(인천광역시남동구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시행
규칙중개정규칙) 3

예 규

- 인천광역시남동구예규제48호(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홍보자료관리지침중개정지침) 5
- 인천광역시남동구예규제49호(인천광역시남동구공보활동요강폐지요강) 9
- 인천광역시남동구예규제50호(인천광역시남동구동앰프방송활용방법폐지방법) 11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56호(인천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공사완료공고) 13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58호(공사입찰공고(공사명: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조성사업
<2·3호광장>)) 14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59호(신조밋폐기공인공고) 17

보건소공고

-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공고제2004-2호(예방접종시행공고) 18

회 람								
--------	--	--	--	--	--	--	--	--

규 칙

인천광역시남동구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4년 1월 30일

인천광역시남동구 규칙 제 609 호

인천광역시남동구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인천광역시남동구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매년 조성되는 각 기금의 100분의50이상을 정기예금으로 예치·관리”를“매년 조성되는 각 기금 누계잔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정기예금으로 예치·관리”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 안 이 유

- 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집행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②항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

☐ 주 요 골 자

- 정기예금 예치·관리
 - 당초 : 매년 조성되는 각 기금의 100분의 50
 - 개정 : 매년 조성되는 각 기금 누계잔액의 100분의 50

예 규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홍보자료관리지침중개정지침을 이에 발령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4년 1 월 30 일

인천광역시남동구 예규 제 48 호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홍보자료관리지침중개정지침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홍보자료관리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협의·보완 및 조정)의 가항중 “구청은 기획감사실장, 기타 사업소 등 산하기관은 주무(계)장(이하 “협의부서”라 한다.)”를 “구 본청은 문화홍보실장, 기타 사업소등 산하기관은 주무(담당)으로 하고 라항(문서 통제관의 협조)을 “삭제”한다.

2. 협의, 보완 및 조정

가. 협의체계

행정홍보자료의 제작 및 배포시 구분청은 문화홍보실장, 기타 사업소등 산하기관은 주무(담당)(이하 “협의부서”라 한다.)과 협의 하여야 하며, 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시기별 주요 홍보 내용 반영에 관한 사항
- (2). 홍보자료 제작 유형에 관한 사항
- (3). 자료 제작시기 및 배부처 결정에 관한 사항

라. 문서 통제관의 협조 <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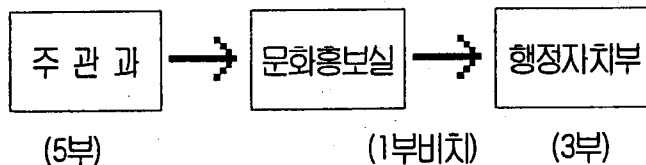
3(행정홍보자료의 관리 및 활용)의 가항중 “기획감사실”을 “삭제”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을 “문화홍보실”로 한다.

3. 행정홍보자료의 관리 및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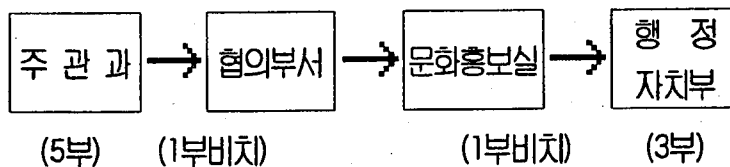
가. 자료의 관리

(1). 구 및 산하기관의 행정홍보자료는 협의부서에서 집중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주관부서에서는 자료의 생산, 배포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구본청



실·과·소·동



(2). 협의부서에서는 자료를 접수하였을시 분야별, 기능별로 자료를 분류하고 행정홍보자료 비치 목록(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자료의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적절한 효용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4(행정사항)중 “구 산하 각급기관의 협의부서에서는”을 “실·과·소·동에서는”으로 하고, “기획감사실”을 “문화홍보실”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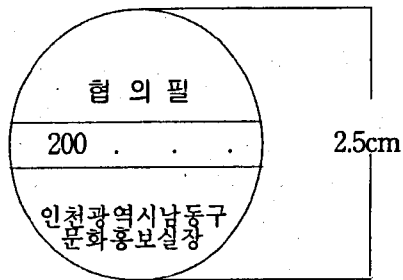
4. 행정사항

실·과·소·동에서는 매월 말일 기준 익월 5일까지 월별 행정홍보물 제작 실적을 행정홍보물 제작 목록표(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홍보자료와 함께 문화홍보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1)중 “기획감사실장”을 “문화홍보실장”으로 한다.

(별표1)

협 의 필 인



(별지 제1호 서식)중 “기획감사실장”을 “문화홍보실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행정홍보자료 협의대장

일련 번호	협의일시	사업주관 부 서	홍보내용	배부처	배부 수	확 인 자		
						담당자	담당	문화홍보실장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홍보자료관리지침(제정1988.12.6, 개정1999.5.4)은 행정홍보자료관리가 기획감사실과 문화홍보실로 이원화되어 실효성이 결여되어 홍보업무 담당부서인 문화홍보실로 협의 관리 및 활용부서를 지정하여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고
- 구 및 산하기관별로 홍보하는 시책, 방침 등을 종합관리 함으로써 효과적인 행정홍보활동을 도모하고자 개정함.

□ 주요골자

- 문서통제관의 협조조항 삭제(안 2의 라항)
- 관리 및 활용부서를 기획감사실에서 문화홍보실로 조정(안 3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보활동요강폐지요강을 이에 발령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4년 1월 30 일

인천광역시남동구 예규 제 49 호

인천광역시남동구공보활동요강폐지요강

인천광역시남동구공보활동요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요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폐지이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보활동요강(제정 1988.12. 6)은 홍보활동을 제정, 통지하여 업무의 신중을 기하고 그 요령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활용빈도가 극히 낮을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노후화된 법규로써 실효성이 저하되어 폐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인천광역시남동구공보활동요강 폐지

인천광역시남동구동앰프방송활용방법폐지방법을 이에 발령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4년 1월 30 일

인천광역시남동구 예규 제 50 호

인천광역시남동구동앰프방송활용방법폐지방법

인천광역시남동구동앰프방송활용방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요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폐지이유

- 인천광역시남동구동앰프방송활용방법(제정 1988.12. 6, 개정 1999. 5. 4)은 무절제한 동앰프 방송으로 시민 정서생활 침해는 물론 중복방송의 역효과 등 저해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제정하였으나
-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 및 다양한 통신매체를 통해 구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동앰프의 사용빈도가 저조할 뿐 아니라 도심속의 소음으로 앰프방송의 실효성이 저하되어 폐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인천광역시남동구동앰프방송활용방법 폐지

공	고
---	---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4-56호

인천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공사완료 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계획과(☎453-266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4. 1. 19.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의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48블럭 6롯데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사회복지시설

(2) 명 칭 : 남동구 공단어린이집 신축공사

3. 사업시행 면적·규모

○ 사업시행지 면적 : $A=1,854.10m^2$

○ 사업의 규모

- 연 면 적 : $A=1,272.57m^2$

- 지 하 1층 : $A=236.19m^2$

- 지 상 1층 : $A=485.43m^2$

- 지 상 2층 : $A=550.95m^2$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근로복지공단

(2)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94-267번지

5. 공사완료일

- 2003. 12. 29

6. 첨 부 : 관계도서(게재 생략)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4 - 58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조성사업(2·3호 광장)

나.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834-10번지(만수천 일원)

다.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간(12개월)

라. 공사개요

- 철거공사 : 소형고압블럭포장(249m²) 등 3종
- 우배수공사 : 우수관 등11종 2098M, 70EA
- 포장공사 : 소형고압블럭포장 등 29종
- 시설물공사 : 사각파고라,운동시설,인공암벽,X-GAME기물 등 41종
- 이식공사 : 상록교목 134주, 낙엽교목 121주
- 식재공사 : 상록교목 259주, 낙엽교목 356주, 상록관목 2,500주
낙엽관목 9,690주, 구칠초 150m², 잔디 12,270m²

마. 설계금액 : ₩2,464,141,000원(추정가격2,198,940,000원, 부가세219,894,000원
관급자재45,307,000원)

바. 현장설명 : 생략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및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된 사업소(영업소)를 두고 입찰
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있는 G2B(국가종합전자
조달)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로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의
조경공사업 면허소지업체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국고 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한 : 2004. 2. 9(월) 09:00~2004. 2.19(목) 14:00

나. 설계도서 열람일시 및 장소 : 2004. 1. 30(금) ~2004. 2.19(목) [문화홍보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정부전자조달(G2B)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정부전자조달(G2B)전자입찰시스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04. 2. 19(목) 15:00

나. 개찰장소 : 인천광역시남동구 자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98호(2002. 10. 2)] 및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99호(2002. 10. 2)] 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최저가(제한적)입찰 자 순으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입찰집행후 낙찰하한가격/예정가격이 86.745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 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적격심사후 지체없이 결정 통보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행정자치부 예규 제99호의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수행능력 평가중 시공경험평가는

당해공사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2000,2001,2002년) 조경공사업 실적누계액
(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비는 제외)의 비율로 평가합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기초금액(2,418,834,000원)의 $\pm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나. 이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8호, 제99호),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적격심사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자치행정과(032-453-2210)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은 인천광역시남동구 인터넷홈페이지(<http://namdong.incheon.kr>)의 입찰공고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4년 1월 29일

인천광역시남동구경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4-59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 및 폐기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1. 30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신조 및 폐기사유 : 수입증지요금계기(인증기)설치 및 폐기
2. 신조공인최초사용년월일 : 2004. 2. 2
3. 신조 공인명 및 인영

신 조 공인명	만수1동 장 인 (민원사무전용)
공인의 인 영	

4. 폐기 공인명 및 인영

폐 기 공인명	만수1동 장 인 (만수1동민원전용)
공인의 인 영	

보건소공고

예방접종 시행 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공고 제2004-2호

전염병예방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 시행을 공고합니다.

2004년 1월 27일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장

예방접종종류	접종연령	접종방법	접종기간
비씨지(B.C.G)	· 생후4주	· 피내주사: 0.05ml	연 중
디프테리아 (Diphtheria) 백일해(Pertussis) 파상풍(Tetaus)	· 2,4,6개월 · 15-18개월 추가 · 만4-6세 추가	· 영아 : 대퇴부전외측0.5ml · 소아 : 삼각근부위0.5ml · 근육주사	
소아마비(Polio)	· 2,4,6개월 · 만4-6세추가	· 경구투여(0.2ml)	
B형간염	· 1,2,3개월 또는 · 1,2,6개월	· 영아: 대퇴부전외측(0.5ml) · 소아: 삼각근부위(0.5ml)	
홍역(Measles) 볼거리(Mumps) 풍진(Rubella)	· 12-15개월 · 만4-6세 추가	· 피하주사(0.5ml)	
일본뇌염	· 12개월후2회 · 1년후 1회 · 만6세추가 · 만12세추가	· 3세미만 근육주사0.5ml · 3세이상 근육주사1.0ml	
인플루엔자	· 36개월이후	· 근육주사0.5ml	9월 -10월